



제422회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유한책임회사 포함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5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7.
3. 회 부 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제23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u>주식회사</u> 및 <u>유한회사</u> 를 말한다.	1. ----- ----- <u>주식회사</u> , <u>유한회사</u> 및 <u>유한책임회사</u> 를-----.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u>유한회사</u> 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u>유한회사</u> 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유한회사</u>	3. ----- ----- ----- -----, ----- <u>유한회사</u> 또는 <u>유한책임회사</u> (이하 “ <u>유한회사등</u> ”이라 한다)인----- ----- <u>유한회사등</u> 으로-----

현행	개정안
에 한정한다. ② (생략)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③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 <u>나목 외의</u> 감사가 없는 <u>유한회사인</u>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 ~ ⑨ (생략)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	----- -----<u>유한회사등에</u>-----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u> 라. -----<u>또는 다목 외의</u>----- -----<u>유한회사등인</u>-----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u>유한회사의</u>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 -----유한회사 등의-----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이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 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음.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부담¹⁾하며, 불이행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 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해당 회사 임원 해임·면직 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 종류로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 및 자산·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와 자산·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를 포함²⁾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하고 있음.

- 2023년 12월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41,212개사이고, 이 중
주식회사가 37,519개사, 유한회사가 623개사임.

[표1]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소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2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2023	833	1,680	129	2,642	37,947	40,589	623	41,212
증감	+14	+89	Δ3	+100	+3,536	+3,636	+57	+3,693
(증감률)	(+1.7)	(+5.6)	(Δ2.3)	(+3.9)	(+10.3)	(+9.8)	(+10.1)	(+9.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24.1.31.)

- 한편, 「상법」상 회사는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로 분류됨.³⁾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회사형태로, 대외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함.
-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의 속성을 가지면서 대외적 책임에 있어서만 유한책임이 결합된 형태로, ① 사원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회사와 달리 설립절차에서 출자의 이행이 강제되고(「상법」 제287조의4⁴⁾), 주식회사·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만 사원에 대한 분배를 할 수 있는 등 자본금 규제(「상법」 제287조의37⁵⁾)도 있으나, ② 업무집행과 지분양도, 손익분배, 사원의 가입과 퇴사 등 내부관계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성을 반영함.⁶⁾
- 한편, 유한회사는 사원이 균등액 단위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며 채권자에 대한 직접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로, 주식회사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①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⁷⁾을 진다는 점, ② 설립이 용이하고 기관구조가

3)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4) 「상법」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5) 「상법」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24., p.1330.

7) 「상법」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

간소화되어 있는 등 소규모·폐쇄적 회사에 적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⁸⁾

-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면, 의결권, 지분의 양도와 정관 변경 등 의사결정구조, 경영형태, 업무집행기관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채권자에 대한 간접·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설립절차에서 출자 이행이 강제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

[표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비교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	○	○	X
사원구성	주주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사원 수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사원 책임범위	간접·유한	간접·유한 (출자전보책임 有)	간접·유한
출자 목적물	재산	재산	재산
의결권	1주 1의결권	1좌 1의결권 원칙	1인 1의결권 원칙
지분의 양도	자유	사원총회 결의	사원 전원 동의
정관 변경 등 의사결정구조	주주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사원 전원 동의
경영형태	소유과 경영 분리	소유과 경영 분리	사원 전원 경영참여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사원 또는 사원 아닌자
필요기관	주주총회, 이사	사원총회, 이사	없음
사채 발행	가능	불가	불가

(자료: 금융위원회)

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동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24., p.1299.

□ 한편,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은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회계 정보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⁹⁾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유한회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였음.

○ 이에 따라,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 결과는 모두 공시하며, 유한회사로 설립·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이 구현되도록 하였음.

□ 그런데, 신외감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면서 일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가 나타남.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의 형태가 영업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회사를 해산하고 다른 종류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조세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 유지의 관점에서 비효율을 막기 위한 제도임¹⁰⁾.

- 「상법」은 주식회사가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회사에서 유한

9)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64권 제4호(2022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 신외감법의 도입과 유한책임회사”, 정도진, 이용석, 장석진.

1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24., p.1338.

책임회사로는 조직을 전환할 수 없으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가능함.¹¹⁾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는 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외감법 시행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크게 증가¹²⁾하였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 등에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사례 등이 나타났음.¹³⁾

□ 이에 개정안은 실질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동일한 영업을 지속하면서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여 외부감사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해외에서 영업했다면 외부감사를 받았을 대규모 유한책임회사¹⁴⁾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유한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12) 국내기업: (2019.) 1,781개사→ (2024. 9.) 3,433개사

외국계 기업: (2019.) 109개사 → (2024. 9.) 204개사

13)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전후 조직변경 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14) 대형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자산 현황(자료: 금융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1.4조원(2023년), HP프린팅코리아 5,790억원(2023년), 아디다스코리아 4,100억원(2016년), 세폴러코리아 3,968억원(2002년)

- 또한, 전통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외에 소비자, 거래처,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점에서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책임회사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기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¹⁵⁾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 좀 더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취지를 제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이사가 없고, 주식회사¹⁶⁾나 유한회사¹⁷⁾에게 적용되는 정기총회 등의 재무제표

15)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발췌

16)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광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17) 「상법」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승인절차가 유한책임회사¹⁸⁾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법」상 “이사”의 정의¹⁹⁾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자”를 포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 등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²⁰⁾는 유한책임회사에 한하여 “업무집행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1

18) 「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를 승인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를 승인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전후 조직변경 사례

□ (사례1) 유한회사 ⇒ ①주식회사 ⇒ ②유한책임회사

회사명	국적	변경등기일	Dart 공시
룩시땅코리아	프랑스	①2019. 11. 8. ②2020. 1. 9.	N/A * (2020년도 재무사항) 자산 265억원, 매출액 654억원, 순이익 47억원 (출처: NICE BizLINE)
아마존코퍼레이트 서비스즈코리아	미국	①2020. 8. 27. ②2020. 10. 6.	N/A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미국	①2020. 8. 27. ②2020. 10. 6.	N/A
애플이엔씨	한국	①2020. 10. 15. ②2020. 12. 2.	2020년도 공시 * (2020년도 재무사항) 자산 490억원, 매출액 421억원, 순이익 92억원, 연차배당 4.9억원
ATN글로벌네트워크 서비스즈코리아	미국	①2020. 10. 19. ②2020. 12. 4.	N/A * (2020년도 재무사항) 자산 215억, 매출액 292억, 순이익 5억 (출처: NICE BizLINE)

* 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독일, ①2019.11.19. ⇒ ②2019.12.24. *자산 1,841억원(2019년))의 경우 CDPI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위대한상상'으로 사명변경 및 주식회사로 변경(2022. 5. 23.)

□ (사례2)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회사명	국적	변경등기일	Dart 공시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	미국	2016. 10. 28.	2016년도까지 공시 * (2016년도 재무사항) 자산 1,231억원, 영업수익 1,795억원, 순이익 136억원, 배당금 146억원
아디다스코리아	독일	2017. 3. 20.	2016년도까지 공시 * (2016년도 재무사항) 자산 4,079억원, 매출 10,004억원, 순이익 1,070억원, 연차배당 900억원, 중간배당 300억원
하이모	한국	2021. 8. 23.	2020년도까지 공시 * (2020년도 재무사항) 자산 936억원, 매출 779억원, 순이익 △11억원, 정기배당 4.7억원
보테가베네타 코리아	이탈리아	2022. 10. 5.	2021년도까지 공시 * (2021년도 재무사항) 자산 1,152억원, 매출 2,333억원, 순이익 44억원, 배당 0
발렌시아가코리아	프랑스	2022. 10. 18.	2021년도까지 공시 * (2021년도 재무사항) 자산 666억원, 매출 1,350억원, 순이익 1,070억, 배당 0
입생로랑코리아	프랑스	2022. 10. 21.	2021년도까지 공시 * (2021년도 재무사항) 자산 847억원, 매출 1,890억원, 순이익 89억원, 배당 0
하이퍼커넥트	한국	2022. 11. 8.	2021년도까지 공시 * (2021년도 재무사항) 자산 1,150억원, 영업수익 1,820억원, 순이익 △272억원, 배당 0
케어링와치앤주얼리 코리아	프랑스	2022. 11. 9.	2021년도까지 공시 * (2021년도 재무사항) 자산 349억원, 매출 635억원, 순이익 16억원, 배당 0

* 이베이코리아(미국, 주식 ⇒ 유한책임 변경등기 2019. 12. 24. * 자산 1조8천억원(2018년))의 경우 신세계 그룹에 합병된 후 '지마켓'으로 사명 변경하고 주식회사로 변경(2022. 6. 29.)

□ (사례3) 주식회사 ⇒ ❶유한회사 ⇒ ❷주식회사 ⇒ ❸유한책임회사

회사명	국적	변경등기일	Dart 공시
잡코리아	한국	❶2012. 5. 29. ❷2020. 8. 31. ❸2020. 10. 12.	2011년도까지 공시 * (2011년도 재무사항) 자산 608억, 영업수익 608억, 순이익 270억, 전기중간배당 148.5억
세플러코리아	독일	❶2003. 12. 10. ❷2020. 9. 24. ❸2020. 11. 9.	2002년도까지 공시 * (2002년도 재무사항) 자산 3,968억, 매출 3,449억, 순이익 398억, 배당 0
세플러안산	독일	❶2005. 12. 30. ❷2020. 9. 21. ❸2020. 11. 9.	2004년도까지 공시 * (2004년도 재무사항) 자산 642억, 매출액 729억, 순이익 64억, 배당 0
구찌코리아	프랑스	❶2014. 12. 30. ❷2020. 9. 18. ❸2020. 11. 24.	2013년도까지 공시 * (2013년도 재무사항) 자산 1,519억, 매출 2,425억, 순이익 161억, 배당 0
에이치피프린팅 코리아	미국	❶2018. 8. 31. ❷2024. 8. 13. ❸2024. 9. 24.	2023년도까지 공시 * (2023년도 재무사항) 자산 5,790억, 매출 4,036억, 순이익 306억, 배당 0

□ (사례4)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회사명	국적	등기일	Dart 공시
네슬레코리아	스위스	2014. 2. 6.	N/A * (2020년도 재무사항) 자산 1,052억, 매출 3,358억, 순이익 170억
마이크로소프트 5673코리아	미국	2017. 3. 13.	N/A * (2023년도 재무사항) 자산 1.4조, 매출 4,113억, 순이익 190억
웨일코코리아	중국	2024. 2. 23	N/A

* 큐텐코리아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로 설립(2022.2.23.)했으나, 최근 주식회사로 변경(2023. 11. 13.)

(자료: 금융위원회)